



제323회 임시회
2013. 9. 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3년 8월 23일
- 회부일자 : 2013년 8월 28일

3. 제안이유

- 결핵환자에 대한 항결핵제 무료 제공에 따른 투약의 불성실이 우려되어 보급수수료(1개월 2,000원)를 징수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 2013년부터 직접 복약확인 치료사업을 실시하여 결핵환자의 투약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어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의미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폐지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관련 사항 규정
- 제2조(징수대상) 결핵환자로서 보건소에 등록된 자 중 보건소장이 선정한 자
- 제3조(수수료 징수위탁) 결핵환자 등록 보건소의 관할 시장·군수
- 제4조(수수료) 1인 1개월 기준 2,000원
- 제5조(수수료징수 및 불입)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징수
- 제6조(징수 교부금) 도는 징수금중 100분의 30을 당해 시·군에 교부
- 제7조(수수료의 재활용) 징수된 수수료는 결핵사업에 한하여 사용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는, 결핵환자의 성실한 투약을 통한 치료효과 제고를 위해 1982년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를 근거로 항결핵제를 투약하는 결핵환자들에게 1인당 월 2천원의 보급수수료를 징수해 오고 있으나,
- 그간 사회환경의 변화와 결핵퇴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에 따라 정부에서는 결핵환자의 입원 의료비, 약제비, 접촉자 검진비,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하는 가 하면, 항결핵제 복약확인 사업으로 환자에게 매월 교통비 및 복약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현실에 비취 볼 때 환자에게 보급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실과 모순되고,
- 또한 2012년을 기준으로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보급수수료 징수액은 도내 총 1,232,000원으로 시군 평균으로 볼 때 1개 시군당 102,500 원으로써 이는 실적이 미미하여 수수료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변화된 사회 환경과 결핵퇴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부응하고, 연간 적은 액수의 수수료 징수를 위한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 요소의 제거와 적으나마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 치료에 적극 전념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환자의 성실한 투약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철저한 복약확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1. 결핵환자 현황
2. 보급수수료 징수현황
3. 결핵관련 사업현황
4. 타 시도 조례 폐지현황

1. 전국 결핵신환자 발생현황[환자거주지기준]

(단위 : 명)

연번	지역	2009년	2010년	2011년
	전국	35,845	36,305	39,557
1	서울	7,499	7,534	8,028
2	부산	3,027	3,274	3,357
3	대구	1,973	1,999	2,211
4	인천	1,757	1,897	1,997
5	광주	905	834	948
6	대전	1,047	995	959
7	울산	780	870	966
8	경기	5,978	6,141	7,761
9	강원	1,536	1,469	1,420
10	충북	1,039	1,002	1,126
11	충남	1,624	1,577	1,492
12	전북	1,660	1,491	1,534
13	전남	1,642	1,514	1,700
14	경북	2,459	2,522	2,970
15	경남	2,504	2,719	2,610
16	제주	415	467	478

※ 충북 도내 등록된 결핵환자 수 : 1,558명(2012년말 기준)

<10만명당 결핵 발생률>

(단위 : 명/10⁵)

구분	2009	2010	2011	비고
전국	72.2	72.8	78.9	10만명당 환자수
충북	68.2	65.4	72.9	10만명당 환자수

2. 우리 도 보급수수료 징수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징 수 액	1,376	1,404	1,232	
교 부 액	412	421	369	징수액의 30% 시군 교부

3. 전국 항결핵제 수수료 개정 추진현황

지역	현재 수수료	조례 폐지 계획		비 고
		유	무	
15개소		8	7	
서울	2,000원		○	
부산	2,000원	○		‘13년 2월 폐지 완료
충남	2,000원	○		‘13년 폐지 진행 중
전북	2000원	○		‘13년 폐지 진행 중
전남	2,000원		○	
광주	2,000원		○	
강원	2,000원	○		‘13년 폐지 진행 중
경기	2,000원	○		‘13년 5월 폐지 완료
경북	2,000원	○		‘13년 5월 폐지 완료
경남	2,000원		○	
대구	2,000원		○	
인천	2,000원		○	
대전	2,000원	○		‘13년 폐지 진행 중
울산	2,000원		○	당분간 유지
제주	2,000원	○		‘13년 2월 폐지 완료

4. 2013년도 결핵환자 지원사업 현황

□ 결핵환자 직접복약확인 지원사업

- 예 산 액 :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집행(국비 100%)
- 사업대상 : 복약확인 치료사업에 동의한 환자(도말양성 결핵환자)
- 지원범위
 - 복약장려금 : 월 30,000원(복용률 90% 이상)
 - 여 비 : 월 100,000원(회당 5,000원 지급)

□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 예 산 액 : 질병관리본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국비 100%)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지원내용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10%)의 50% 지원

□ 입원명령 환자 지원사업

- 예 산 액 : 74,348천원(국비 50%, 지방비 50%)

<입원비>

- 사업대상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지원범위 : 입원명령을 받고 입원기간동안 소요되는 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일부 비급여 치료비 : 간병비, 비급여 항결핵제 및 약제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 등

<부양가족생계비>

- 사업대상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중인 결핵환자로 2013년 가구별 최저 생계비 소득수준의 300% 미만(환자가구)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 예 산 액 : 57,664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검진
- 지원범위 : 결핵검진(흉부X-선, 객담도말검사, 객담배양 검사)
잠복결핵검진(TST, IGRA검사) 등